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20가단49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경원

변론 종결 2021. 1. 19

판결 선고 2021.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714,5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육가공납품회사인 D의 직원이 있으며,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19.부터 2019. 12. 4.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52,714,522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기재,증인 C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배우자인 C은 원고에게 물품공급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원고는 2020. 4.6.자 준비서면 등에서는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다), 원고는 C의 지정에 의해 피고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합계 52,714,522원으로 송금하였는데,C은 약속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C과 함께 위 돈을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C은 원고에게 받은 돈의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C과 함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는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의 남편인 C이 원고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주었고, 원고는 C에게 그 업체로부터 이자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써달라고 하 면서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한 것이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주장을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경우 그 청구는 원고 와 피고 또는 원고와 C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물품공급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 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

스스로도 피고 또는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을 금전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청구로 선택하여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반환약정을 한 사람은 C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송금한 돈을 피고와 C이 함께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보라